제 202201146 호

형 식 승 인 서

신청인 **성 명 :** 이태훈

상 호 : 에프에스앤피플 주식회사

사업장주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제에이동 3층 301,302,303호(오전동, 벽산선영테크노피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항 및 제38조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

1. 품 명 유도등

2. 형 식 AC 220 V, DC 3.6 V, 피난구용, 중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3. 형식승인번호 유22-100

4. 조 건

5. 비 고

2022 년 12 월 07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진흥과 소방안전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한 국 소 방 산 업 기 술 원

수신자 에프에스앤피플 주식회사 (대표 이태훈)
(경유) 형식승인 담당자
제목 형식승인의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1. 귀사의 형식승인의 변경(경미한사항)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귀사에서 2024. 8. 2.일자로 형식승인 변경(경미한사항) 신청한 유도등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의 변경(경미한사항)을 승인합니다.

접수번호	품 명	형 식	형식승인 번 호	검토결과
제2400684호 (2024. 8. 2.)	유도등	AC 220 V, DC 3.6 V, 복도통로용, 소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23-11	적합
제2400685호 (2024. 8. 2.)	유도등	AC 220 V, DC 3.6 V, 피난구용, 소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23-12	적합
제2400686호 (2024. 8. 2.)	유도등	AC 220 V, DC 3.6 V, 피난구용, 중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22-100	적합

※ 첨부 : 형식승인의 변경(경미한사항) 신청서류 각 1부. 끝.

한 국 소 방 산 업 기 술 원

직원 이승희 팀장 김준형 부장 전결 09/23
권순관

협조자
시행 시험인증2부-507 (2024.09.23) 접수 ( )
우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 http://www.kfi.or.kr
전화 031-289-2803 전송 (031)287-9061 / gleesh414@kfi.or.kr / 비공개(5,7)
소방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국민안전 동반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7.9.>

검 사 성 적 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03,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1. 신 청 인 ☑ 원 본 ☐ 재발급
   ○ 업체명 : 에프에스앤피플 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제에이동 3층 301,302,303호(오전동, 벽산선영테크노피아)
   ○ 접수번호 및 접수일 : 제2400686호, 2024. 8. 2.

2. 검사성적서의 용도 : 형식승인용

3. 검사대상 종별(품명) : 유도등

4. 검사기간 : 2024. 8. 2.~2024. 9. 23.

5. 검사방법 : 소방청고시 제2024-6호(2024. 4. 1.)

6. 검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7. 검사환경
   ○ 온도 : (22.6 ± 2.5) ℃, 습도 : (53 ± 5) % R.H.

8. 검사결과 : 합격
   ※ 첨부 : 세부 형식시험 결과(2 ~ 5 페이지 참조)

확 인	실 무 자 성 명 : 이 승 희 (서명)	기 술 책 임 자 성 명 : 권 순 관 (서명)

위 성적서는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

2024년 9월 23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인)

비고 1.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 KS Q ISO/IEC 17020 및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2.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첨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03,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형식시험 결과

업체명	에프에스앤피플 주식회사	형식승인번호	유22-100
품 명	유도등	형 식	AC 220 V, DC 3.6 V, 피난구용, 중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시험항목				결과			비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료(개)	검사결과	판 정	
제3조	일반구조	구조검사	구조가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3	적 합	합 격	
		음성/점멸 유도장치	음성/점멸 유도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2	해당없음	—	
제3조의2	부속장치		부속장치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1	해당없음	—	
제4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스위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은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3	시험생략	합 격	*
		표시등		3	적 합	합 격	
		전자계전기		3	해당없음	—	
		퓨즈		3	시험생략	합 격	*
		예비전원		3	시험생략	합 격	*
제5조	전 원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고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을 것	3	시험생략	합 격	*
제7조	외함의 재질	금속	외함이 금속인 것은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스테인레스강등)재질을 사용할 것	1	해당없음	—	
		강화유리	외함이 내열성 강화유리인 것은 두께가 3 mm 이상일 것	1	해당없음	—	
		합성수지 열변형시험	(90 ± 2) ℃에서 7일간 방치했을 경우, 열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	1	적 합	합 격	
		합성수지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을 것	1	시험생략	합 격	*

"계속"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03,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형식시험 결과

업체명	에프에스앤피플 주식회사	형식승인번호	유22-100
품 명	유도등	형 식	AC 220 V, DC 3.6 V, 피난구용, 중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시험항목				결과			비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료(개)	검사결과	판 정	
제8조	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등	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	표시면은 내부부품이나 구조물에 의한 그늘 또는 얼룩이 생기지 아니할 것	1	시험생략	합 격	*
		평균휘도	상용점등시 및 비상점등시의 평균휘도는 규정된 범위 이내일 것	2	시험생략	합 격	*
		휘도비	표시면의 휘도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제9조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	적 합	합 격	
제11조	통로유도등의 구조		표시면 또는 조사면은 외함에서 10 ㎜ 이상 돌출되는 구조일 것	3	해당없음	—	
제12조	객석유도등의 구조		바닥 또는 의자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바닥면을 비출 수 있을 것	3	해당없음	—	
제12조의2	바닥매립형 유도등의 정하중시험		바닥에 매립하는 유도등은 상부 중앙 50 ㎜ 직경의 원에 9 800 N (1 000 kg)의 하중에 변형이 없을 것	1	해당없음	—	
제12조의3	명암비시험		단일표시형 유도등의 표시면의 명암비는 0.5 이상일 것	1	적 합	합 격	
제13조	살수 및 방수시험	살수시험	바닥에 매립하는 통로유도등은 매분 3 ㎜의 비율로 (45 ± 2) ° 각도에서 물을 주입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2	해당없음	—	
		방수시험	방수형유도등은 수심 0.15 m로 30분간 침지시키는 방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2	해당없음	—	

"계속"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03,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형식시험 결과

업체명	에프에스앤피플 주식회사	형식승인번호	유22-100
품 명	유도등	형 식	AC 220 V, DC 3.6 V, 피난구용, 중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시험항목				결과			비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료(개)	검사결과	판 정	
제14조	절연저항시험		교류입력측과 외함 등 규정된 부위의 절연저항은 기준에 적합 할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제15조	절연내력시험		교류입력측과 외함 등 규정된 부위가 절연내력시험에서 1분간 견딜 것	2	적 합	합 격	
제16조	식별도 및 시야각시험	식별도	피난유도표시의 식별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시야각시험	피난구 유도등은 시야각시험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제17조	소음시험		점등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1 m 거리에서 40 dB 이하일 것	3	시험생략	합 격	*
제18조	자동전환장치등의 작동시험		정격전압의 80 %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하며 전환기능은 10회 반복시 이상이 없을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제18조의2	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10 ± 2) ℃에서 2시간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명확히 점등 될 것	1	시험생략	합 격	*
제18조의3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70 ± 2) ℃에서 1시간 방치한 후 비상점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1	적 합	합 격	
제19조	충전장치		축전지의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정격용량 이상 충전 될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제21조	광속표준전압시험 및 소비전력	광속표준전압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광속표준전압이 설계치 이상일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소비전력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소비전력이 설계치 이하일 것	2	시험생략	합 격	*
제21조의2	비상전원조도시험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의 조도는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1	적 합	합 격	
제23조	조도시험		규정된 위치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측정한 조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없음	—	

"계속"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 031-289-2803, Fax :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형식시험 결과

업체명	에프에스앤피플 주식회사	형식승인번호	유22-100
품 명	유도등	형 식	AC 220 V, DC 3.6 V, 피난구용, 중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시험항목				결과			비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료(개)	검사결과	판 정	
제24조	반복시험		2 500회 작동을 반복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2	적 합	합 격	
제24조의2	내식시험		금속체의 외함 및 부품지지대는 KS D 9502에 의한 시험 후 부식 부분이 없을 것	1	해당없음	—	
제24조의3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	투광식	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 그림문자 색상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적 합	합 격	
		패널식	패널식 유도등의 투과면 그림문자 색상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없음	—	
제24조의4	진동시험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2	적 합	합 격	
제24조의5	충격시험		충격으로 인한 조립상태 등 구조에 이상이 없을것	2	시험생략	합 격	*
제24조의6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 할 것	1	시험생략	합 격	**
제24조의7	습도시험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의 조건에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1	적 합	합 격	
제25조	표시 및 취급설명서		표시사항이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3	시험생략	합 격	*
제25조의2	표시내구성시험	표시침지시험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란 후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에 적합할 것	1	적 합	합 격	
		표시내열시험	(80 ± 2) ℃의 공기중에 10일 동안 방치한 후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에 적합할 것	1	적 합	합 격	

※ 기 타 1. "*" 표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
2. "**" 표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제출로 인한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

끝.